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제형벌 합리화 계획('22.6) 관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 표기를 한 자에 대한 형벌 규정(벌금)을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토록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24.10.22., '25.4.23. 시행)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70조, 별표3)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 표기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

과 같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0조제3항 법 제21조제3항	300	600	1,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행	개 정 안								
<신 설>		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 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 설>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제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th></tr><tr><th>1회</th><th>2회</th><th>3회 이상</th></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0조제3항 법 제21조제3항	300	600	1,000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연 락 처	(044) 202 - 6331